

감사결과 지적사항 요약

1.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법령 등 미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가입금 2.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 3. 그 밖에 수입금”으로 되어 있어 운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지 불명확하며,
- △△△ 발행, ★★★ ★★대회, ◇◇◇투어 등 사업비에 대한 지원 조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과에서는 ◇◇◇ 단체에 운영비(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및 사업비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그 러지 아니하였다.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일반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과 운영비(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 쓸 수 있다
- □□□□과는 총 3건, 1,010천원에 대하여 야간근무자 특근매식비를 일반 운영비의 급량비 통계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3. 피복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행사운영비(피복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고, 자치단체 체육행사경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 나. 그런데 □□□과에서는 □□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 피복 구입(4,752천 원)에 대하여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함이 타당한데도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사무관리비(피복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 집행은 공무원이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하는 등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그런데 ○○○○과에서는 제*회 ○○○ △△인 한마음대회 등 2건, 4,333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 다. ◆◆◆과에서는 ☆☆☆☆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 담당자 2명에게만 피복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원요원 3명에게 570천 원을 추가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4.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나. 그런데도 □□□□과에서는 인부임 지급 3건(**** 제초작업 2건, ***사고지 ○○○ 등 청소 1건), 1,222천 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함이 타당한데도 사무관리비에 예산편성하여 지출하였으며,
- 다. □□□ ○○○○ 보수공사 3건, 3,663천 원에 대하여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로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물시설유지비 3,240천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음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사무관리비(피복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 집행은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그런데도 □□□□과에서는 ◇◇◇ 활동복 제작 5건, 12,380천 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무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5.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소홀

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적정 물품 구입

-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나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로 집행하는 통계목임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201○. ○. ○. ◇◇◇◇◇
 - ◇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식대, 교통비 등 실비 이외에 ○○시 □□로 ○○특산품 할인매장에서 440,000원의 특산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비 지급

- □□□□과에서는 201○년 ◆◆◆◆ 유치 방문홍보 외 3건, 620천원, □□□□과에서는 **** 간담회 참석 외 1건 120천원, □□□과에서는 **** ***관리 과정 교육 참석 외 1건 140천원, △△△△과에서는 201○년도 **** 교육여비로 160천원을 민간인들에게 실제 들어간 비용 식대, 교통비 등 이외에 일비로 총 9건, 1,0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 12. 27. 시행)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를 집행한다.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1. 201○. *** *** 강사수당(8명, 1,214,800원) 2. 201○. *** ** 1차** 강사수당(2명, 495,200원) 3. 2016 *** ** 2차** 강사수당(3명, 645,000원) 총 3회 금2,355,000원에 대하여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지 않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 초과근무자 급식비 집행 관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는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을 자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 제공경비라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급식비 지급 기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외 5개과에서는 오전 8시 직전 출근하여 시간외 근무를 등록하고 오후 19시 전에 퇴근을 한 자에 대하여 초과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감사기간 내 총 230건 1,673,000원의 건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7.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과에서는 201○. ○. ○. ***** 지원대상 선정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군의회로부터 *****협의회 위원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심사위원이 된, ◇◇◇의원에게 참석수당으로 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